2024학년도 2학기 교직원대상

청렴 및 갑질 근절 교육 연수

북일여자고등학교

순서

1. 청탁금지법
2. 공익신고자보호법
3. 공공재정환수법
4. 이해충돌방지법
5. 공직자행동강령
6. 갑질 근절 대책

1.청탁금지법

1) 금품수수금지

2) 부정청탁금지

3)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1. 청탁금지법

1) 금품수수금지

- 1회 100만원 (연간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연간300만원)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1. 청탁금지법

2) 부정청탁금지

1.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 청탁
2. 각종 표창, 수상, 우수자 선발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표창장, 각종 운동부 대회출전 선수 선발 등)
3.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학교운영위원회 등)
4.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1. 청탁금지법

3)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1. 신고대상 : 모든 외부강의 x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2. 신고기한 : 사전신고

(예외적으로 사후신고 인정)

외부강의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O

A. 초·중등교육법령 또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구성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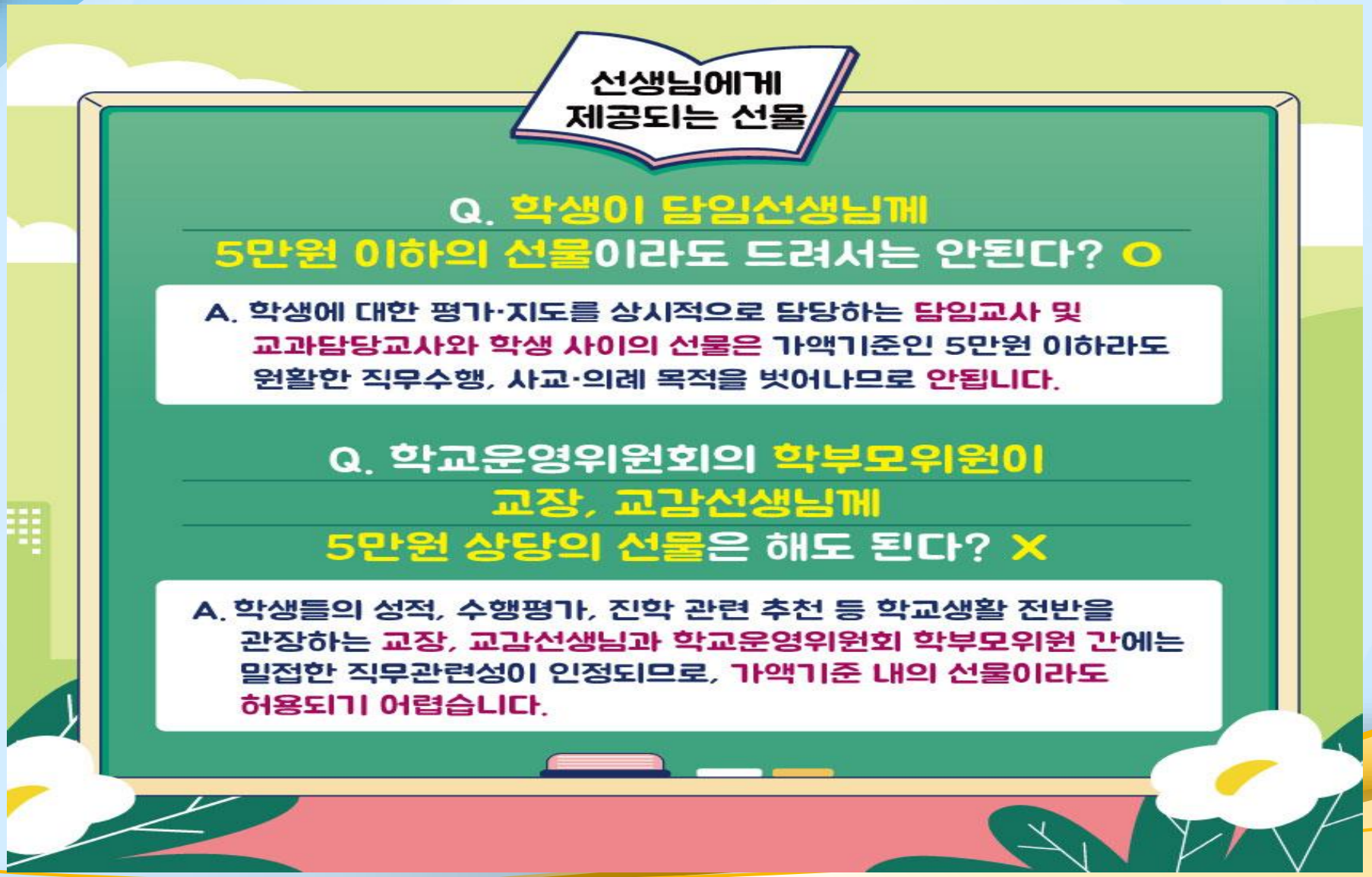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이 적용

Q.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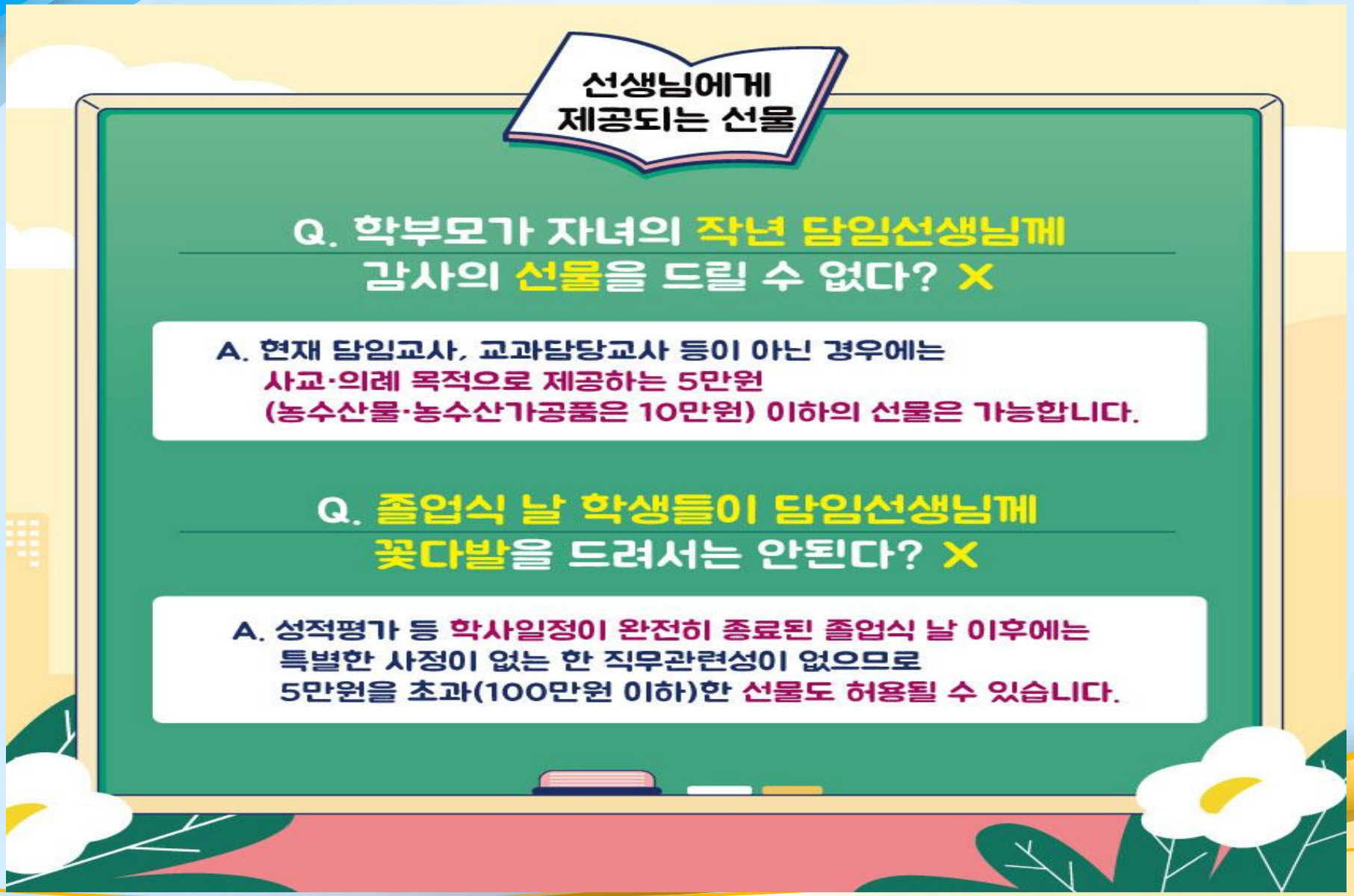
A.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기간제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으로 적용대상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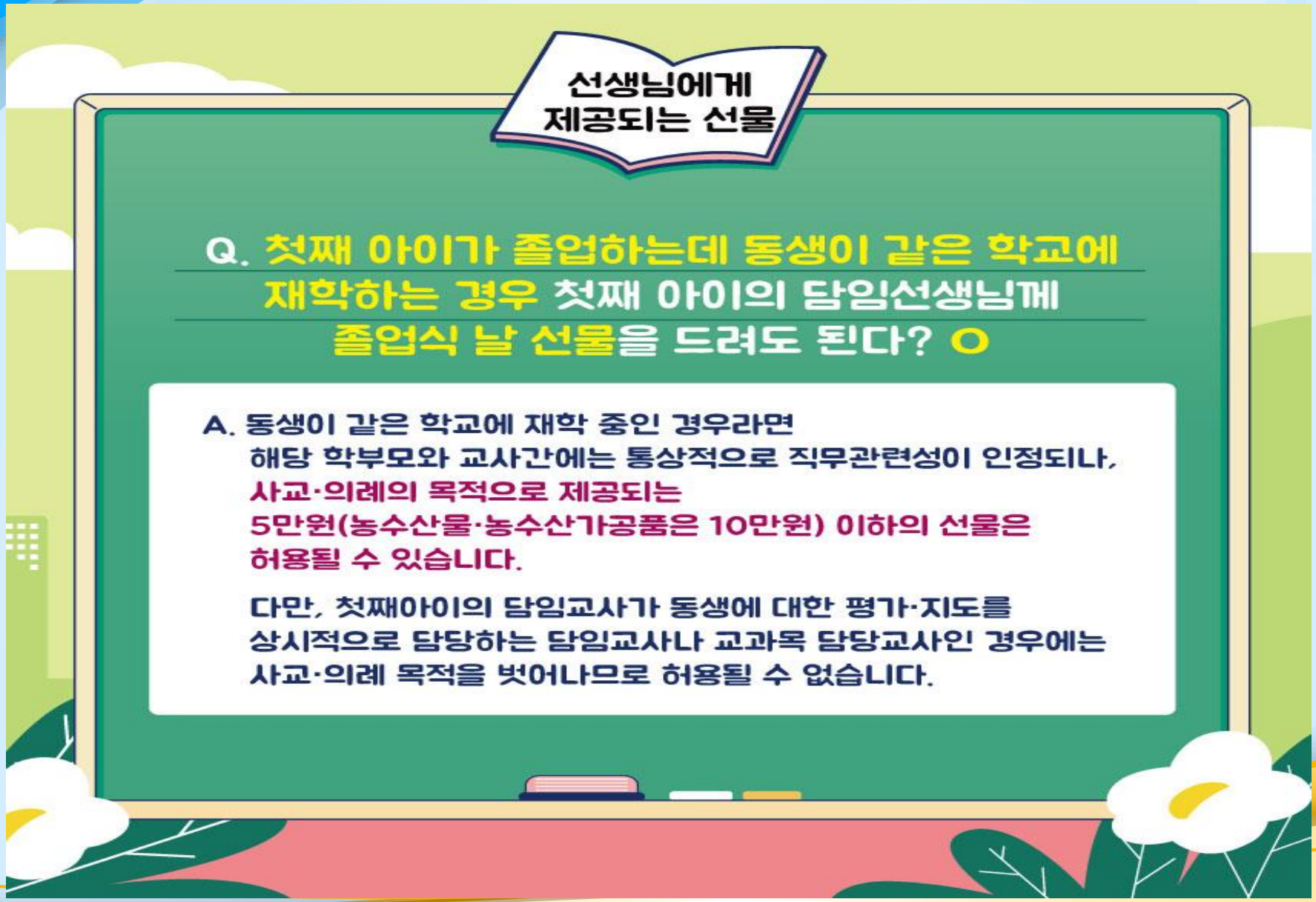
1. 청탁금지법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드려서는 안된다? O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은 해도 된다? X
A.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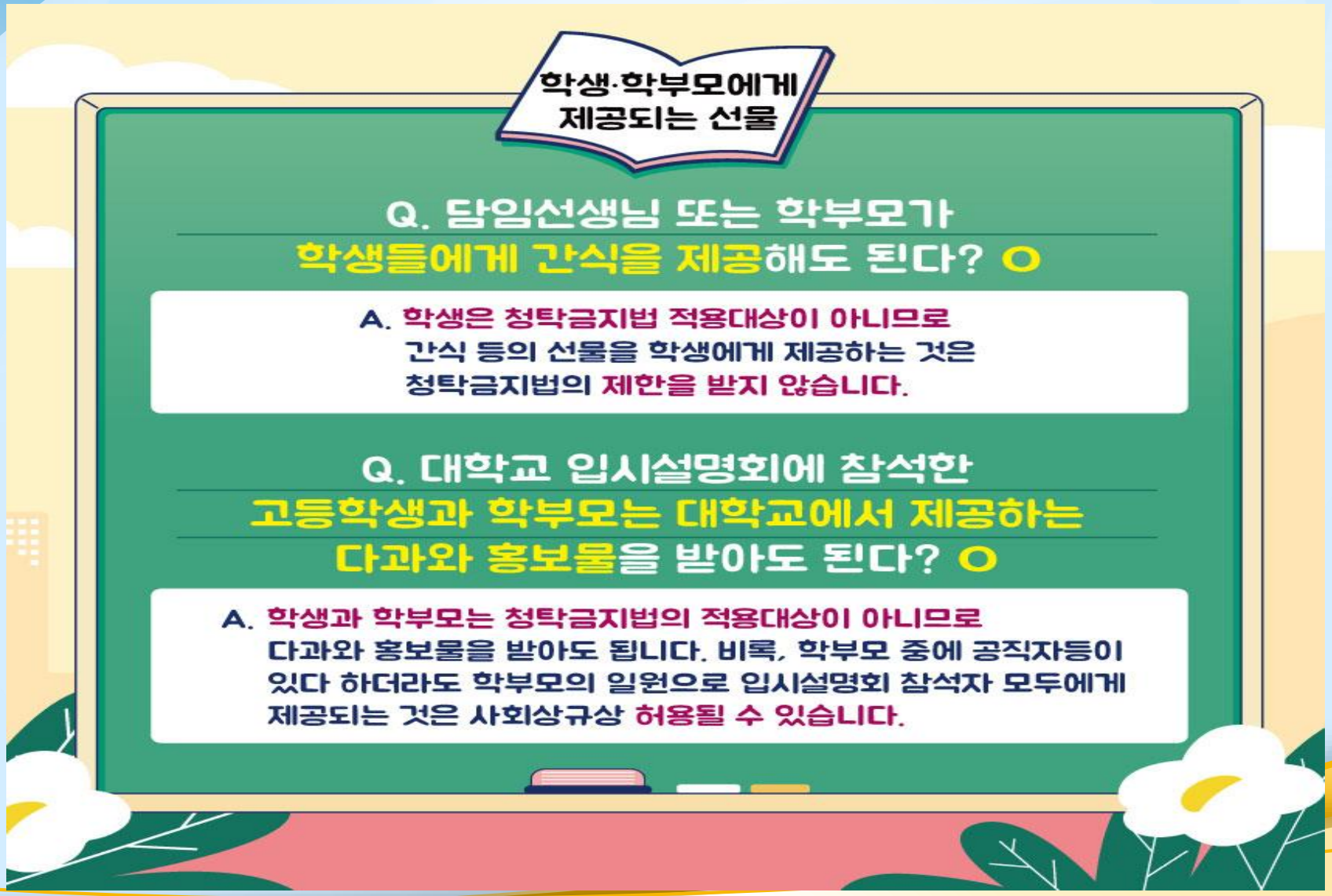
1. 청탁금지법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X
A.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 졸업식 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X
A.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졸업식 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원을 초과(100만원 이하)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청탁금지법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 첫째 아이가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된다? O
A.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해당 학부모와 교사간에는 통상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아이의 담임교사가 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나 교과목 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1. 청탁금지법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Q. 담임선생님 또는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된다? O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된다? O
A.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됩니다. 비록, 학부모 중에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 입시설명회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청탁금지법(스승의 날)

Q1.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학생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2.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1.청탁금지법(스승의 날)

③ Q.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④ Q.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1.청탁금지법(스승의 날)

Q5.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교사에게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교 ·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Q6.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4.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적용대상→모든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용어 설명

직무관련자

1.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용어 설명



사적이해관계자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
2.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4.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또는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5.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출자지분 총수의 30%,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6.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장/국장/과장으로서 직무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공직자
7.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8. 최근 2년 이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의 상대방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 ☑ 신고의무자: 공직자
- ☑ 신고의무발생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임을 알게 된 경우
- ☑ 신고방법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 ☑ 위반 시 제재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신고의무자: 공직자

- ☑ 신고의무발생
  소속 공공기관의 퇴직자(최근 2년 이내) 인 직무 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

- ☑ 신고방법
  사적접촉 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적 접촉 후 14일 이내 신고)

- ☑ 위반 시 제재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03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1.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x] 제한대상자: 공직자

- [x] 제한행위

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나.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라.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마.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나/라/마 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

- [x] 위반 시 제재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가족 채용 제한

- ☑ 제한대상: 공공기관
- ☑ 제한행위: 다음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 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 나.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 위반 시 제재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경우)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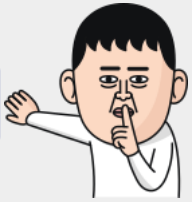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제한대상: 공공기관
- ☑ 제한행위: 다음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가.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 하는 공직자
  - 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 조사하는 지방의회 의원
  - ....(생략)
- ☑ 위반 시 제재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등이 자신이나 가족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 한 경우)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 금지대상: 공직자
- ☑ 금지행위: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 ☑ 위반 시 제재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

공직자

- 본인, 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본인, 제3자의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자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물,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미공개정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 공개되기 전의 것

5. 공직자 행동강령의 정의

강령이란?

특정 조직·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러한 강령 중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공직자 행동강령'이라고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을 말한다.

5.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례

사례



허위출장을 내고 다른 직원의 경조사를 지원하도록 지시(제10조)

○○지사장은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신입직원들에게 허위 출장을 내고 다른 직원 부친상 장례식장에 가서 일을 돕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였음



기관명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제공 (제10조의2)

모 중앙행정기관 A국장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단법인 OO협회 관계자 B로부터 당해 협회가 개최하는「OOO 유료 미술대회」에 위 부처가 협찬하는 것처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국장은 자기 기관에서 마치 위 대회를 협찬하는 것처럼 현수막 등 광고물에 자신의 기관명을 사용토록 하고 추천사를 써주는 등 많은 학생들이 위 대회의 공신력을 믿고 참가하도록 유도함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제11조제3항)

- 기관장A는 인사 차 찾아온 고향후배와 환담 중 청사시설 보수 업무 담당국장을 불러 고향후배에게 보수계획을 브리핑하도록 한 후 "후배의 민생해결을 위해 일을 맡겨 보라"고 하였음.
- 경찰청 직원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받고 있는 친구를 위해 사건 담당자인 동료직원에게 선처해 줄 것을 청탁함
- 공무원이 공직 취임예정자(지자체장 당선자) 신분인 자에게 취임 후 당해 기관에 지인의 취업을 부탁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제12조)

모 중앙행정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인 A사무관은 상장기업인 甲건설업체를 직무상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된다는 언론에 공개 되지 않은 정보를 알게 되자, 동료직원과 함께 해당 업체의 주식을 다량 매입하였고 공사 수주가 공시되자 주가가 크게 올라 이를 매각하여 거액의 차액을 남김

5.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례

사례



시간외수당으로 접대비 조성 (제4조)

모 농업기술센터 A소장은 예산담당자B 등 부하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 후 1인당 매월 1만원씩 '회비' 명목으로 납부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였고, 이렇게 조성된 약 1천3백만 원으로 직무와 관련된 감독기관 공무원, 시의원 등에게 제공할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등 기관운영과 대내·외 활동비로 집행함. 예산담당자B는 각 과 서무직원 등에게 메일로 부당한 회비 징수 및 납부를 독려함



사적이해관계 신고 불이행 (제5조)

개정 삭제

- ○○부 차관은 ○○부가 발표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에 본인 및 가족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직무관련자이고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음
- ○○구청장과 아들 2명이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 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직무관련자이고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음



근무기간 중 승진시험 배려 (제6조)

모 도청 사업본부 A과장은 고교 후배인 부하직원 B주무관이 지난번 시험에서 한 차례 낙방하고 시험공부에 대한 애로를 토로하자 충분히 시험공부를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험 준비기간 동안 해당 직원이 업무를 보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독서실, 학원 등에서 사무관 승진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승진 청탁 (제9조)

기초자치단체 7급 공무원인 A는 평소 안면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B를 찾아가 이번 6급 심사 승진 시 자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였음. B국회의원은 자신의 비서관을 시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A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청탁케 함

6. 갑질(부당한 지시) 근절 대책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업무처리 시 감정상의 불만이나, 막연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만으로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없음

갑질 주요 유형

유형	예시
법령 등 위반	인사담당자에게 특정인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사적이익 요구	기관장이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사적으로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행위
부당한 인사	기관장이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 미리 승진자를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시키는 행위
비인격적 대우	옷을 지적하며 "싼티가 난다","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돈을 써야한다"는 등 상대방을 비아냥 거리는 행위
기관 이기주의	발주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예산부족 등으로 시공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
업무 불이익	상급자가 퇴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자에게 퇴근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민원응대	처리하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관련성이 희박한 다른 직원·부서·기관 등에 민원서류를 떠넘기는 행위
기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회식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행위



6. 갑질(부당한 지시) 근절 대책

*고충 상담 사례

1. 물품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다른 물품 구매
2. 방과후학교 위탁 업무 추진시 제반 평가 등 투명성 결여
3. 갑질상담 요청에 대한 책임관 또는 관리자의 미온적 태도
4. 직무와 무관한 사적 단체 지원(출장) 및 동원 강요
5. 수업시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반말,욕설,공포분위기,차별 등)
6. 비민주적인 상명하달의 조직문화
7. 정보주체의 동의와 절차 없이 CCTV 무단 확인
8. 특정 직원에 대한 근무 또는 복무(일처리) 수시 확인 등

6. 갑질(부당한 지시) 근절 대책

*사안발생 – 지시거부/상담요청, 신고 – 학교장 보고 – 조치 지시

*신고 - 사실관계 조사 – 조치 –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6. 갑질(부당한 지시) 근절 대책

*관련 법규,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기타 당시 상황(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 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